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7,267,556	11,018,027
일반회계	350,249,744	10,507,492
특별회계	17,017,812	510,534
기타특별회계	17,017,812	510,534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301,235	39,037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4,864,001	145,92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779,965	113,399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93,093	5,793
삼계도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5,990	1,980
드림빌특별회계	2,404,081	72,122
주택사업특별회계	70,349	2,110
건축진흥특별회계	200,000	6,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45,522	10,3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93,576	113,80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27,88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